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80

발의연월일: 2024. 8. 9.

발 의 자:김도읍・구자근・김예지

신동욱 • 권영진 • 서지영

인요한 • 박정훈 • 조지연

김석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·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,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,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·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 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 규정되어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정비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,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·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55조).

법률 제 호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 중 "제13조를 위반한 자"를 "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 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면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(벌칙) 제13조를 위반한 자	제55조(벌칙) <u>제13조제1항을 위반</u>
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	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
한다.	로 채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면
	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
	<u> 거짓으로 보고한 자</u>